



제400회 국회 (정기회)
제4차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분야별 재원배분방안 국회보고 및 조기 결산 등〉

■ 김진표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117116호· 제2117117호)

2022. 9.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박태형

목 차

I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1
1. 제안경위	1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
1. 제안경위	2
2. 제안이유	2
3. 주요내용	3
III . 검토의견	4
1. 분야별 재원배분방안의 국회보고	4
2. 예산요구서의 소관 상임위 보고	8
3. 조기 결산 심사 및 심사결과의 예산안 반영 등	12
※ 참고자료	20

I.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1.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김진표 · 고용진 · 김병주 · 김상희 · 김영주 · 박재호 ·
변재일 · 설 훈 · 신정훈 · 우원식 · 윤호중 · 전해숙
의원(12인)

나. 발 의 일 : 2022. 8. 31.

다. 회 부 일 : 2022. 9. 1.

※ 의안번호 : 17116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회가 결산에 대한 심의·의결을 정기회 개회 전까지 완료하도록 결산의 심의기한을 정하고 있음.

그런데 결산심사가 대체로 8~9월 중에 실시됨에 따라 9월 초 제출되는 정부의 다음 연도 예산안에 결산심사 결과를 환류하는 것이 제약되고, 이는 국회의 재정권한 및 예산심의권을 약화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결산의 심의·의결을 매년 7월 15일까지 완료하도록 심의기한을 앞당겨 결산심사 결과 시정요구된 사항을 다음 연도 예산안에 반영하는 것이 용이하도록 개선함으로써 국회의 재정권한 및 예산심의권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28조의2).

II.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1.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김진표 · 고용진 · 김병주 · 김상희 · 김영주 · 박재호 ·
변재일 · 설 훈 · 신정훈 · 우원식 · 윤호중 · 전해숙
의원(12인)

나. 발 의 일 : 2022. 8. 31.

다. 회 부 일 : 2022. 9. 1.

※ 의안번호 : 17117

2. 제안이유

현행법은 기획재정부장관이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한 예산안편성지침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고,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안편성지침에 따라 예산요구서를 작성하여 매년 5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다음 회계연도 예산안 및 국가재정운용계획은 9월 초에야 국회에 제출되어 예산안 편성의 기초자료가 예산안 심의 단계 이전에 국회에 충분히 공유되지 못하는 실정이고, 재원배분의 중요방향이 정부 내에서 결정됨에 따라 재정권한이 정부에 편중되는 문제가 있음.

한편, 국회의 재정권한 및 예산심의권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서는 국정감사 및 결산심사를 조기에 실시하고, 시정요구된 사항을 다음 회계연도 예산안에 반영하도록 의무화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회가 국가적 자원배분의 방향 설정 단계부터 관련 정보를 파악하고 검토할 수 있도록 하고, 결산심사 결과의 예산안 반영을 의무화하여 재정권한의 견제와 균형을 도모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기획재정부장관은 분야별 자원배분방안을 매년 4월 30일까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안 제30조의2 신설).

나.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요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기 전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이에 대한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도록 함(안 제31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신설).

다. 현재 5월 30일까지인 정부의 국가결산보고서의 국회제출 기한을 5월 15일까지로 변경함(안 제60조 및 제61조).

라. 정부는 국회의 결산심사 결과 시정요구 받은 사항을 다음 회계연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반영하도록 함(안 제32조의2 신설, 안 제85조).

Ⅲ. 검토의견

1. 분야별 재원배분방안의 국회보고(「국가재정법 개정안」 §30의2 신설)

개정안은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하여금 다음 회계연도의 분야별 재원 배분방안을 매년 4월 30일까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특위’)에 보고하도록 하려는 것임.

[표-1] 「국가재정법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30조의2(분야별 재원배분방안의 국회보고) 기획재정부장관은 다음 회계연도의 분야별 재원배분방안을 매년 4월 30일까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현행 예산안 편성 및 국회 제출 절차¹⁾를 살펴보면, 정부는 1월부터 8월까지 “중기사업계획서 제출”, “예산안편성지침 통보”, “예산요구서 제출” 등의 내부 절차를 거쳐 편성한 예산안을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²⁾하고 있음. 또한, 5회계연도에 대한 재정운용목표, 분야별 재원배분계획 및 투자방향 등을 제시하는 국가재정운용계획 역시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³⁾되고 있음.

이러한 정부의 예산안 편성 및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과정에서

1) 정부는 예산안 편성과 유사한 절차를 거쳐 기금운용계획안을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하고 있으나, 동 목차(1번)에서는 논의의 편의를 위해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에 관한 사항은 생략하였음.

2) 「국가재정법」 제33조(예산안의 국회제출) 정부는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예산안을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3) 「국가재정법」 제7조(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등) ①정부는 재정운용의 효율화와 건전화를 위하여 매년 해당 회계연도 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재정운용계획(이하 “국가재정운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예산안편성지침」⁴⁾과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방향」⁵⁾의 국회 보고 외에는 별도의 국회 보고·제출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예산안 편성 관련 정보가 사전에 충분히 국회에 공유되지 못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음.

특히, 「국가재정법」 제29조는 「예산안편성지침」에 중앙관서별 지출한도를 포함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고 이를 예결특위에 보고하도록 규정⁶⁾하고 있으나, 실제로 통보·보고되는 「예산안편성지침」에는 중앙관서별 지출한도가 포함되어 있지 않음.

또한, 과거에는 예결특위 회의를 개최하여 재정당국에서 예산안 편성방향과 국가재정운용계획안(국가재정운용계획 추진상황) 등을 보고 하기도 하였으나⁷⁾, 최근에는 예결특위에서 이를 보고받은 사례가 없는 상황임.

이와 같이 예산안 편성과 심의가 분절적으로 운영되는 구조적인 한계와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해 각 분야별 자원배분에 국회가 사실상 관여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거시적 조정 및 심사를 수행하는 데 한계가 있고 촉박한 예산안 심의기간 동안 세부사업 위주의 미시적

4) 「국가재정법」 제30조(예산안편성지침의 국회보고) 기획재정부장관은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한 예산안편성지침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5) 「국가재정법」 제7조(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등) ⑨ 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재정운용계획을 국회에 제출하기 30일 전에 재정규모, 재정수지, 자원배분 등 수립 방향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6) 「국가재정법」 제29조(예산안편성지침의 통보)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다음 연도의 예산안편성지침을 매년 3월 31일까지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7조의 규정에 따른 국가재정운용계획과 예산편성을 연계하기 위하여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예산안편성지침에 중앙관서별 지출한도를 포함하여 통보할 수 있다.

7) < 재정당국의 예산안편성방향 등 예결특위 보고 사례 >

구분	일자	주요 안건
제17대 국회	2005. 3. 16	국가재정운용계획수립 추진상황 및 2006년 예산안 편성방향 보고
	2005. 5. 24, 25, 26	국가재정운용계획안보고
	2006. 3. 29.	2007년도 예산안 편성방향 보고 및 국가재정운용계획수립 추진상황 보고

심사에 치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이에 개정안은 다음연도의 분야별 재원배분방안을 매년 4월 30일까지 예결특위에 보고하도록 하여 국회가 재원배분의 방향 설정 단계부터 관련 정보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회가 분야별 재원배분방안의 타당성과 적정성을 검토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로 보임.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다음연도 분야별 재원배분방안에 대한 사전심사는 정부 편성과정을 사실상 구속하여 편성 재량이 크게 축소되는 등 헌법상 예산안 편성권⁸⁾을 제한·침해하고, 예산안 제출 이전에 행해지는 「예산안편성지침」,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방향」 보고 등을 통해 충분히 국회와 사전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는 입장임.

그러나 개정안은 「예산안편성지침」의 예결특위 보고(「국가재정법」 제30조)와 마찬가지로 다음연도 분야별 재원배분방안을 예결특위에 보고하도록 규정할 뿐 이에 대해 국회가 심의·의결하는 내용을 두고 있지 않고, 더욱이 국회가 다음연도 분야별 재원배분방안을 논의하더라도 이는 예산안 편성의 참고사항으로 정부를 구속하는 것은 아님.

또한, 「예산안편성지침」이나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방향」의 내용을 살펴보면, 각각 ‘분야별⁹⁾ 중점 투자방향’과 ‘분야별¹⁰⁾ 재원배분 방향’만 간략히 적시되어 있고 재원배분계획 등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이들만으로는 구체적인 재원배분방안을 파악하기 어려움.

8) 「대한민국헌법」 제54조 ①국회는 국가의 예산안을 심의·확정한다.

②정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이를 의결하여야 한다.

9) 보건·복지, 교육, 문화체육·관광, 환경, 산업·중소기업·에너지, SOC, 농림수산, R&D, 국방, 외교·통일, 일반·지방행정, 공공질서·안전

10) 사회, 경제, 행정

따라서 개정안과 같이 다음연도 분야별 재원배분방안을 예결특위에 보고토록 하여 국회의 거시적 재정통제 기능을 강화하고, 예산안 심의 이전에 재정정책에 대한 논의를 공론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임.

다만, 개정안의 ‘다음연도 분야별 재원배분방안’의 의미에 대해서는 검토할 필요가 있음. 현행 「국가재정법」 제7조제2항¹¹⁾은 국가재정운용계획 포함 사항으로 ‘분야별 재원배분계획¹²⁾ 및 투자방향’을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의 ‘다음연도 분야별 재원배분방안’이 이러한 ‘계획’이나 ‘방향’을 의미하는 것인지¹³⁾ 또는 별도의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인지가 불분명하므로 이를 논의과정에서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을 것임.

11) 「국가재정법」 제7조(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등) ②국가재정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3. **분야별 재원배분계획** 및 투자방향

12) 국가재정운용계획의 분야별 재원배분계획은 [참고자료 1] 참조

13) 현재 예결특위에 보고되는 「예산안편성지침」에는 분야별 중점투자방향이 포함되어 있어 ‘다음연도 분야별 재원배분방안’은 분야별 중점투자방향과 사실상 내용이 유사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과 국회에서 구체적인 재원배분 내역을 알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다음 회계연도의 분야별 재원배분방안’을 ‘다음 회계연도의 분야별 재원배분계획안’으로 수정하는 방안도 검토가 가능하다고 보임.

2. 예산요구서의 소관 상임위 보고(「국가재정법 개정안」 §31③~⑤ 신설)

개정안은 예산안 편성의 기초인 각 부처의 예산요구서와 관련하여 상임위원회가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예산요구서 제출 이전(매년 5월 31일¹⁴⁾)에 중앙관서별 지출한도와 예산요구서를 보고받은 뒤, 예산요구서에 대한 의견을 소관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한편,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 하여금 예산요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함에 있어 제시된 소관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표-2] 「국가재정법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1조(예산요구서의 제출) ①·②(생략) <u><신설></u>	제31조(예산요구서의 제출) ①·②(현행과 같음) <u>③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예산요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기 전에 그 내용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통보받은 중앙관서별 지출한도와 함께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u>
<u><신설></u>	<u>④ 상임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보고받은 예산요구서에 대한 의견을 소관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시할 수 있다.</u>
<u><신설></u>	<u>⑤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예산요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함에 있어 제4항에 따라 제시된 소관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u>
<u>③(생략)</u>	<u>⑥(현행 제3항과 같음)</u>

14) 「국가재정법」 제31조(예산요구서의 제출) ①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29조의 규정에 따른 예산안편성지침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다음 연도의 세입세출예산·계속비·명시이월비 및 국고채무부담행위 요구서(이하 “예산요구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매년 5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현행 「국가재정법」은 각 중앙관서의 장이 제출하는 예산요구서에 따라 기획재정부가 예산안을 편성¹⁵⁾하여 이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즉,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제도적으로 국회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이에 개정안은 상임위원회가 소관 부처의 예산요구서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를 신설하려는 것으로, 동 제도가 도입된다면 각 부처의 예산요구서에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게 됨.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예산요구서에 대해 사전 보고를 받고 수정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정부 예산안 편성 과정에 대한 개입 소지 등 정부 예산안 편성권 침해 가능성이 있고, 사전보고 이후 소관 상임위원회 내에서 수정의견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는 등의 행위는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 우려가 있으며, 정부의 예산안 편성절차가 지연되는 등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입장임.

또한, 국회 예산·결산 심사기능 강화에 관한 공청회(2022. 9. 15.)에서도 일부 진술인들은 분야별 재원배분계획에 대한 정보를 국회에 사전 보고·제출토록 하는 것은 거시적 재정통제 관점에서 바람직한 반면, 예산요구서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사전보고할 경우 상임위원회의 증액 위주의 심사 관행이나 개별사업 위주의 미시적 심사가 더욱 강화될 우려가 있고¹⁶⁾, 사전적 국회 심사를 거치게 되어 예산안 편성 및 심의 과정에서 혼란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의견¹⁷⁾을 개진하였음.

15) 「국가재정법」 제32조(예산안의 편성) 기획재정부장관은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예산요구서에 따라 예산안을 편성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후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6) 류철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17) 하연섭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다만, 개정안 제31조제5항은 각 중앙관서의 장이 예산요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할 때 제시된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존중”과 관련된 「국가재정법」의 입법례¹⁸⁾를 고려할 때 각 중앙관서의 장이 이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됨¹⁹⁾.

아울러 예산안은 각 중앙관서의 장이 제출한 예산요구서에 따라 최종적으로 기획재정부장관이 편성하는 것으로 그 과정에서 각 부처의 예산요구내역이 변경·조정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소관 상임위원회의 의견은 예산안 편성의 참고사항으로 정부의 예산안 편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볼 수도 있을 것임.

또한, 소관 상임위원회의 의견 제출이 지연된다면 각 중앙관서의 장은 그 기한에 맞추어 예산요구서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하여 예산안 편성 절차가 계속 진행될 것으로 보이므로, 이러한 제도 도입에 따라 예산안 편성 절차가 현행보다 지체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보임²⁰⁾.

한편, 개정안에 대하여는 다음의 사항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음.

첫째, 국가재정법은 예산안 편성(제2장제2절)과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제4장)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규정²¹⁾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예산안 편

18) 「국가재정법」 제40조는 정부로 하여금 독립기관의 예산을 편성할 때 독립기관의 장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예산안 편성과정에서 협의절차 등을 통해 국회 등이 제출한 예산요구서의 내역은 상당 부분 수정되고 있다고 함.

「국가재정법」 제40조(독립기관의 예산) ①정부는 독립기관의 예산을 편성할 때 해당 독립기관의 장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여야 하며, 국가재정상황 등에 따라 조정이 필요한 때에는 해당 독립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19) 또한, 개정안이 예산요구서에 대한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가 아니라 의견 제시를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상임위원회가 예산요구서에 대한 수정안을 심사하기보다는 소관기관의 예산요구서에 대해 상임위원들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상임위원회 회의가 운영될 가능성이 있음.

20) 각 중앙관서의 장이 보고한 예산요구서에 대해 예산요구서의 기획재정부 제출기한(5월 31일) 전까지 소관 상임위원회가 의견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각 중앙관서의 장이 예산요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음.

21) 「국가재정법」 제66조(기금운용계획안의 수립) ①기금관리주체는 매년 1월 31일까지 해당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 동안의 신규사업 및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주요 계속사업에 대한 중기사업계획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성에 관한 사항만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도 이러한 절차를 동일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음.

둘째, 현행 「국회법」 제23조제2항²²⁾은 국회 소관 예산요구서는 국회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정부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국회에 대해서는 국회운영위원회가 별도로 의견을 제출할 실익이 없으므로, 국회 소관 예산에 대해서는 이를 예외로 할 필요가 있음.

②기획재정부장관은 자문회의의 자문과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매년 3월 31일까지 기금관리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기획재정부장관은 제7조의 규정에 따른 국가재정운용계획과 기금운용계획 수립을 연계하기 위하여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에 기금별 지출한도를 포함하여 통보할 수 있다.

④기획재정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기금관리주체에게 통보한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기금관리주체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에 따라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계획안을 작성하여 매년 5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 ⑧ (생략)

22) 「국회법」 제23조(국회의 예산) ② 의장은 국회 소관 예산요구서를 작성하여 국회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정부에 제출한다. 다만, 「국가재정법」에서 정한 예산요구서 제출기일 전일까지 국회운영위원회가 국회 소관 예산요구서의 심사를 마치지 못한 경우에는 의장은 직접 국회 소관 예산요구서를 정부에 제출할 수 있다.

3. 조기 결산 심사 및 심사결과의 예산안 반영 등(「국가재정법 개정안」 §32의2·§60·§61·§85, 「국회법 개정안」 §128의2)

개정안은 국회의 결산 심사결과가 다음 회계연도의 예산안 편성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 결산 심사를 보다 조기에 실시하려는 것으로, 구체적으로 국가결산보고서 검사 및 제출기한을 앞당기고 국회의 결산 심의기한을 “정기회 개회 전”까지에서 “7월 15일”까지로 단축시키는 한편, 결산심사 결과의 다음 회계연도 예산안 반영을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

[표-3] 개정안 주요 내용

구 분		현 행	개정안
국가재정법 개정안	결산심사 결과의 예산안 반영(안 §32의2 신설 §85)	-	정부는 결산 시정요구 받은 사항을 다음 회계연도의 예산안에 반영
	감사원 국가결산보고서 검사기한(안 §60)	5월 20일	5월 10일
	국가결산보고서 국회 제출기한(안 §61)	5월 31일	5월 15일
국회법 개정안	결산 심의기한 (안 §128의2)	정기회 개회 전	매년 7월 15일

[표-4] 개정안 신·구 조문대비표

구 분	현 행	개 정 안
국가재정법 개정안	<신 설>	제32조의2(결산심사 결과의 예산 안 반영) 정부는 「국회법」 제84조제2항 에 따라 시정요구 받은 사항을 다음 회계연도의 예산안에 반영하여야 한다.

구 분	현 행	개 정 안
	제60조(결산검사) 감사원은 제59조에 따라 제출된 국가결산보고서를 검사하고 그 보고서를 다음연도 5월 20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60조(결산검사) ----- ----- ----- -----5월 10일----- ----- -----.
	제61조(국가결산보고서의 국회 제출) 정부는 제60조에 따라 감사원의 검사를 거친 국가결산보고서를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1조(국가결산보고서의 국회 제출) ----- ----- -----5월 15일----- -----.
	제85조(준용규정) 제31조제3항·제35조·제38조·제38조의2·제38조의3·제39조·제45조·제49조·제50조·제54조 및 제55조의 규정은 기금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85조(준용규정) ----- 제32조의2·제35조----- ----- ----- ----- -----.
국회법 개정안	제128조의2(결산의 심의기한) 국회는 결산에 대한 심의·의결을 정기회 개회 전까지 완료하여야 한다.	제128조의2(결산의 심의기한) -- ----- --매년 7월 15일까지----- -----.

결산은 단순히 재정집행결과를 보고서로 작성하는 과정이 아니라, 재정집행 결과에 대해 국회의 사후심의를 받는 과정인 동시에 결산심의 결과를 다음연도 예산안 편성·심의에 반영하는 환류과정임²³⁾.

23) 김춘순, “국가재정: 이론과 실제”, 2018. 6.

먼저, 결산의 국회 제출기한에 관한 사항을 살펴보면, 「국가재정법」 제정 이전에는 「예산회계법」(2006. 10. 4. 폐지) 제45조에 따라 국가결산보고서의 국회 제출기한이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9월 2일)까지’로 규정되어 있었음. 그러나 당시 정부의 예산안 제출기한이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10월 2일)까지’로 규정되어 있어, 예산안 심사 및 결산심사가 사실상 모두 정기국회 기간에 이루어지고 결산심사 결과가 예산안 심사에 반영되지 못하는 등의 문제가 있었음.

이에 국회는 2003년 「국회법」 개정을 통해 국회가 정부로 하여금 5월 31일까지 감사원의 검사를 거친 결산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요구²⁴⁾하는 규정을 두었음. 이후 2006년 「국가재정법」 제정 시 국가결산보고서 제출기한을 ‘5월 31일’로 규정하고, 정부에 대한 국회의 결산 제출요구조항을 삭제하며 현행에 이르고 있음.

[표-5] 2003회계연도~2021회계연도 결산 제출일자 및 국회 심사 경과

구 분	결산 제출일	상임위 최초 상정일	예결위 상정일	예결위 의결일	본회의 의결일
2003회계연도 결산	2004. 8. 6.	2004. 8. 24.	2004. 9. 14.	2004. 12. 6.	2004. 12. 8.
2004회계연도 결산	2005. 7. 27.	2005. 8. 16.	2005. 8. 22.	2005. 9. 7.	2005. 9. 14.
2005회계연도 결산	2006. 6. 9.	2006. 6. 22.	2006. 8. 30.	2006. 9. 29.	2006. 9. 29.
국가재정법 제정(2007. 1. 1. 시행)에 따라 국가결산보고서 제출일이 5월 31일로 앞당겨짐					
2006회계연도 결산	2007. 5. 31.	2007. 6. 14.	2007. 8. 27.	2007. 9. 20.	2007. 10. 8.
2007회계연도 결산	2008. 5. 30.	2008. 9. 8.	2008. 9. 23.	2008. 10. 2.	2008. 11. 24.
2008회계연도 결산	2009. 5. 28.	2009. 7. 20.	2009. 9. 18.	2009. 9. 29.	2009. 9. 29.
2009회계연도 결산	2010. 5. 28.	2010. 8. 24.	2010. 9. 13.	2010. 10. 1.	2010. 10. 1.

24) 법률 제6855호 「국회법」 제128조의2 (결산의 제출요구 등) ①국회는 감사원의 검사를 거친 결산(기금결산을 포함한 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회계연도마다 다음 회계연도 5월 31일까지 제출하도록 정부에 대하여 요구한다.

②국회는 결산에 대한 심의·의결을 정기회 개회전까지 완료하여야 한다.

구 분	결산 제출일	상임위 최초 상정일	예결위 상정일	예결위 의결일	본회의 의결일
2010회계연도 결산	2011. 5. 30.	2011. 6. 13.	2011. 8. 22.	2011. 8. 31.	2011. 8. 31.
2011회계연도 결산	2012. 5. 31.	2012. 8. 21.	2012. 8. 23.	2012. 9. 3.	2012. 9. 3.
2012회계연도 결산	2013. 5. 31.	2013. 9. 30.	2013. 11. 4.	2013. 11. 26.	2013. 11. 28.
2013회계연도 결산	2014. 5. 30.	2014. 7. 3.	2014. 7. 15.	2014. 10. 2.	2014. 10. 2.
2014회계연도 결산	2015. 5. 29.	2015. 6. 25.	2015. 8. 18.	2015. 9. 8.	2015. 9. 8.
2015회계연도 결산	2016. 5. 31.	2016. 7. 7.	2016. 7. 12.	2016. 9. 1.	2016. 9. 2.
연간 국회 운영 기본일정 작성기준에 8월 임시회 추가					
2016회계연도 결산	2017. 5. 31.	2017. 8. 16.	2017. 8. 21.	2017. 12. 5.	2017. 12. 6.
2017회계연도 결산	2018. 5. 31.	2018. 8. 21.	2018. 8. 21.	2018. 12. 7.	2018. 12. 8.
2018회계연도 결산	2019. 5. 31.	2019. 8. 19.	2019. 8. 26.	2019. 10. 22.	2019. 10. 31.
2019회계연도 결산	2020. 6. 1.	2020. 8. 20.	2020. 8. 24.	2020. 11. 12.	2020. 11. 19.
2020회계연도 결산	2021. 5. 31.	2021. 8. 17.	2021. 9. 6.	2021. 12. 2.	2021. 12. 2.
2021회계연도 결산	2022. 5. 31.	2022. 8. 17.	2022. 8. 29.	※ 2022. 9. 8. 기준 미처리	

다음으로, 국회의 결산 심의기한에 관한 사항을 살펴보면, 2003년 국회의 결산제출요구조항 도입과 함께 정기회 개회 전까지 결산을 심의·의결하도록 규정을 마련하였음.

그러나 위 표에서 볼 수 있듯이 실제로 대부분 국회는 정기회 개회 이후에 결산을 심의·의결하고 있는 실정임. 특히, 2016년 12월 「국회법」을 개정하면서 연간 국회 운영 기본일정의 작성기준에 8월 임시회(8. 16. ~ 31.) 집회가 추가²⁵⁾되었는데, 그 이전에는 상임위원회와

25) 법률 제15620호 「국회법」 제5조의2(연간 국회 운영 기본일정 등) ① 의장은 국회의 연중 상시 운영을 위하여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의 협의를 거쳐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국회 운영 기본일정(국정감사를 포함한다)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국회의원 총선거 후 처음 구성되는 국회의 해당 연도 국회 운영 기본일정은 6월 30일까지 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연간 국회 운영 기본일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작성한다.

1. 2월·4월 및 6월 1일과 8월 16일에 임시회를 집회한다. 다만, 국회의원 총선거가 있는 경우 임시회를 집회하지 아니하며, 집회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에 집회한다.

예결특위에서 결산을 6월이나 7월에 상정하여 심사를 진행한 사례도 있었으나, 그 이후로는 연례적으로 8월에 결산을 상정하여 심사를 진행하고 있음.

이와 같이 결산 심의·의결이 늦어짐에 따라 결산 심사 시 국회가 시정을 요구한 사항들이 다음연도 정부 예산안에 환류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음.

특히, 8월 중순 이후에는 예산안 편성 절차가 사실상 마무리된다고 할 수 있는데, 8월에 결산을 상정하여 이를 정기회 개회 전에 심의·의결한다고 하더라도 다음연도 예산안 편성 시 국회의 결산 심사 결과를 반영하기 어려운 구조라는 점에서 개정안과 같이 결산의 심의기한을 앞당길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것임. 이에 따라 국가결산보고서 검사 및 제출기한 조정 역시 국회의 결산 심의기간 확보를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보임.

아울러 결산심사 결과를 예산안에 반영토록 하는 조항(안 제32조의 2) 신설은 결산과 예산의 환류과정을 재확인하고 그 규범력을 높이기 위한 것이므로 타당한 입법 조치로 생각됨²⁶⁾.

26) **국가결산보고서 제출일자 단축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국가결산보고서 국회제출 기한 단축은 감사원 결산검사 결과의 기재부 송부 기한 단축을 전제로 검토될 사항이나, 국가결산보고서 국회 제출시기는 꾸준히 단축하여 더 이상 줄일 여력이 없는 상황으로, 추가 단축할 경우 법정기한을 준수하지 못하거나 자료의 정확성이 떨어질 우려가 있다는 입장임. **감사원**은 40일 이내에 결산검사와 검사보고서 작성을 완료하여야 하는데, 보고서 작성 및 수정, 감사위원회 부의 등에 필요한 기간(20일)을 고려하여 최소한의 기간(20일)으로 결산검사를 수행하는 실정이라고 하면서 개정안과 같이 검사기간을 30일로 단축할 경우 충실한 결산검사 및 그 보고서 작성에 어려움이 야기될 우려가 있다는 입장임. **다만**, 결산검사 인력의 추가 투입 또는 실무적으로 국가결산보고서 감사원 송부 기한(현행법상 4월 10일) 단축 등을 통해 그 기간 내 검사를 완료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도 있다고 보임.

<※ 국가결산검사 방법(출처 : 2021 회계연도 결산 검사보고(감사원, 2022) >
○ 세입·세출(수입·지출) 결산의 경우 59개 국가기관 소관 계산서(22종)와 한국은행의 국고금 잔액과 월계대사 등을 통하여 그 일치 여부 및 출납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고, 세입·세출(수입·지출) 결산 계수의 정확성 여부 등을 확인
○ 재무제표의 경우 계정과목의 적용 오류, 자산부채 누락 등 회계처리 오류를 점검하여 재무제표가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를 확인
○ 성과보고서의 경우 성과측정을 위한 성과지표, 측정방법 등 성과 요소의 적정성 및 성과달성도의 적정 여부 등을 확인

다만, 개정안에 대해서는 다음의 사항을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음.

첫째, 국회의원 총선거가 있는 연도에는 국가결산보고서의 제출일자를 달리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국회의원의 임기 만료일은 국회의원 총선거가 있는 해의 5월 29일로, 그 임기가 만료되면 해당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의안들은 폐기처리됨²⁷⁾²⁸⁾. 국회의원 총선거가 있는 해의 5월 15일에 정부가 국가결산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국회의원 임기만료에 따라 이 역시 폐기처리되며, 국회의원 임기 시작 이후 이를 다시 제출해야 함.

따라서 국회의원 총선거가 있는 연도에 한해 정부의 국가결산보고서 제출일을 현행과 같이 5월 31일로 하는 방안 등을 논의할 필요가 있음.

둘째, 예비비사용총괄명세서의 국회제출 기한도 앞당길 필요가 있음. 현행 「국가재정법」 제52조제4항에 따르면 예비비사용총괄명세서의 국회 제출기한은 국가결산보고서 제출기한과 동일한 5월 31일임²⁹⁾. 일반적으로 결산과 예비비지출 승인을 함께 처리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

결산 심사결과와 다음연도 예산안 반영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예산안 편성과정에서 시정요구사항 등 결산 결과를 적극 반영하고 있고, 시정요구사항을 예산안 편성 시 그대로 반영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것은 행정부의 예산안 편성권을 과도하게 제약할 우려가 있다는 입장임.

그러나 결산 시정요구사항의 상당 수는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는 ‘제도개선’이나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한 ‘주의’ 등으로 시정요구사항이 그 자체로 다음 회계연도 예산의 증감을 직접 수반하기보다는 시정요구사항을 고려하여 정부가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재량적으로 예산안을 직전년도 대비 증감시키거나 사업방식을 개선하는 것이므로 예산안 편성권을 제약하지 않는다고 볼 수도 있음.

* 2020 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 유형별 건수(중복 포함 총 1,953건) : 징계 2건, 시정 220건, 주의 534건, 제도개선 1,197건

27) 「대한민국헌법」 제51조 국회에 제출된 법률안 기타의 의안은 회기 중에 의결되지 못한 이유로 폐기되지 아니한다.

다만, 국회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8) 2012년 2월 29일 제출된 ‘2011회계연도 한국교육방송공사 결산 승인안’은 임기 중에 처리되지 못하여 18대 국회의원 임기만료일인 2012년 5월 29일자로 폐기되었고, 2012년 6월 12일에 다시 제출되었음.

29) 「국가재정법」 제52조(예비비사용명세서의 작성 및 국회제출) ④정부는 예비비로 사용한 금액의 총괄명세서를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국회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를 국가결산보고서 제출기한과 동일하게 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임.

셋째, 개정안에 따르면 5월 15일부터 7월 15일까지 기간 중에 결산에 대한 심사가 진행되어 7월 임시회 개회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나, 「국회법」 제5조의2제2항³⁰⁾의 연간 국회 운영 기본일정 작성기준은 7월 임시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 않음.

①연간 국회 운영 기본일정은 회기 전체 의사일정이나 당일 의사일정을 구속하는 것은 아니나, 국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의원의 계획성 있는 의정활동을 위한 것으로 의사일정 작성시 이를 존중할 필요가 있다는 점, ②최근 연간 국회 운영 기본일정에는 8월 임시회에서의 결산 심의를 명시³¹⁾하고 있고, 실제로도 상임위원회와 예결특위에서 8월에 결산을 상정·심의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결산 심사기한을 앞당길 경우에는 연간 국회 운영 기본일정 작성기준의 8월 임시회를 7월 임시회로 전환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임³²⁾.

참고로 현재 결산 심의기한 등을 단축시키는 개정안들이 발의되어 있으므로 개정안 심사 시 이들을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음.

30) 「국회법」 제5조의2(연간 국회 운영 기본일정 등) ① 의장은 국회의 연중 상시 운영을 위하여 각 교섭단체 대표의 원과의 협의를 거쳐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국회 운영 기본일정(국정감사를 포함한다)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국회의원 총선거 후 처음 구성되는 국회의 해당 연도 국회 운영 기본일정은 6월 30일까지 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연간 국회 운영 기본일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작성한다.

1. 2월·3월·4월·5월 및 6월 1일과 8월 16일에 임시회를 집회한다. 다만, 국회의원 총선거가 있는 경우 임시회를 집회하지 아니하며, 집회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에 집회한다.

31) 2022년 연간 국회 운영 기본일정 중 8월 임시회 관련 사항은 [참고자료 2] 참조

32) 한편, 이 외에도 개정안은 제31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신설하면서 기존의 제3항을 제6항으로 변경하였는데, 금융운용계획의 예산 준용규정(제85조)에는 이러한 수정사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를 함께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표-6] 개정안 간 국가결산보고서 제출 및 국회 결산 심의기한 등 비교

구 분	현 행	진성준의원안* (국가재정법, 국회법 개정안)	양경숙의원안 (국가재정법 개정안)	김진표의원안
중앙관서결산보고서 기재부 제출기한	2월 말일	2월 15일	1월 31일	-
기재부 국가결산보고서 감사원 제출기한	4월 10일	3월 25일	3월 31일	-
국가결산보고서 감사원 검사기한	5월 20일	5월 6일	4월 20일	5월 10일
국가결산보고서 국회 제출기한	5월 31일	5월 15일	4월 30일	5월 15일
국회 결산 심의기한	정기회 개회 전	국가결산보고서 제출일로부터 45일 이내	-	7월 15일
예비비사용 총괄명세서 국회 제출기한	5월 31일	5월 15일	-	-

* 단, 진성준의원안은 국회의원 총선거가 있는 해는 각종 제출·검사 기한(국회 결산 심의기한 제외) 등을 현행과 같이 함

문 의 처

02)6788-5016

(조원, %)

구 분	'21	'22	'23	'24	'25	연평균 증가율
1. 보건·복지·고용	199.7 (10.6)	216.7 (8.5)	232.2 (7.1)	246.1 (6.0)	259.3 (5.3)	(6.7)
2. 교육	71.2 (△2.0)	83.2 (16.8)	84.8 (2.0)	87.4 (3.0)	90.0 (3.0)	(6.0)
3. 문화·체육·관광	8.5 (5.8)	8.8 (3.9)	9.1 (3.5)	9.4 (3.5)	9.8 (3.4)	(3.6)
4. 환경	10.6 (17.8)	11.9 (12.4)	12.9 (8.5)	13.7 (6.1)	14.5 (5.9)	(8.2)
5. R&D	27.4 (13.1)	29.8 (8.8)	32.3 (8.5)	34.0 (5.2)	35.4 (4.0)	(6.6)
6. 산업·중소기업·에너지	28.6 (20.8)	30.4 (6.0)	32.6 (7.5)	35.0 (7.2)	36.4 (4.1)	(6.2)
7. SOC	26.5 (14.1)	27.5 (3.8)	28.7 (4.4)	29.5 (2.5)	30.2 (2.4)	(3.3)
8. 농림·수산·식품	22.7 (5.3)	23.4 (3.4)	24.0 (2.3)	24.4 (2.0)	24.9 (1.8)	(2.4)
9. 국방	52.8 (5.4)	55.2 (4.5)	57.7 (4.4)	60.3 (4.6)	63.1 (4.5)	(4.5)
10. 외교·통일	5.7 (3.5)	6.0 (5.7)	6.2 (3.3)	6.4 (3.2)	6.6 (3.2)	(3.8)
11. 공공질서·안전	22.3 (7.0)	22.4 (0.3)	23.4 (4.4)	24.3 (4.1)	25.1 (3.1)	(3.0)
12. 일반·지방행정	84.7 (7.2)	96.8 (14.3)	100.4 (3.7)	103.0 (2.6)	105.8 (2.7)	(5.7)



I. 2022년도 국회운영기본일정 개관

구 분		주 요 활 동		비 고
월별	집회일 (회기)	본 회 의	위 원 회	
1월			1. 법률안 등 안건심사	※ 정부 입법계획 제출시한: 1. 31.(월)
2월 (임시회)	2. 3.(목) (26일간)	1. 교섭단체대표연설 2. 대정부질문 3. 법률안 등 안건심의	1. 법률안 등 안건심사	
3월 (임시회)	3. 2.(수) (30일간)	1. 법률안 등 안건심의	1. 법률안 등 안건심사	※ 제20대 대통령 선거일,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일: 3. 9.(수)
4월 (임시회)	4. 1.(금) (30일간)	1. 대정부질문 2. 법률안 등 안건심의	1. 법률안 등 안건심사	※ 새 정부출범(5. 10.)에 따른 국무 총리 등 인사청문회 실시 예상
5월 (임시회)	5. 2.(월) (30일간)	1. 의장·부의장 선거 2. 상임위원장 등 선거 3. 법률안 등 안건심의	1. 법률안 등 안건심사	※ 새 정부출범(5. 10.)에 따른 국무총리·국무위원 등 인사 청문회 실시 예상 ※ 결산 제출·의결시한 - 제출시한: 5. 31.(화) - 의결시한: 정기회 전
6월 (임시회)	6. 2.(목) (29일간)	1. 교섭단체대표연설 2. 대정부질문 3. 법률안 등 안건심의	1. 법률안 등 안건심사 2. 국정감사(6. 13.~7. 2.)	※ 전국동시지방선거일: 6. 1.(수)
7월			1. 법률안 및 결산 등 안건심사	
8월 (임시회)	8. 16.(화) (16일간)	1. 결산 등 심의 2. 법률안 등 안건심의	1. 법률안 및 결산 등 안건심사	※ 결산 심의기한 - 정기회 개회 전까지 심의·의결 완료
9월~12월 (정기회)	9. 1.(목) (100일간)	1. 교섭단체대표연설 2. 대정부질문 3. 예산안 시정연설 4.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등 심의 5. 법률안 등 안건심의	1. 법률안 및 예산안 등 안건심사	※ 예산안 제출·의결시한 - 제출시한: 9. 3.(토) - 의결시한: 12. 2.(금)

II. 2022년도 회기별 국회운영기본일정

8 월 임시회

□ 집 회 일: 2022. 8. 16.(화)

□ 회 기: 16일간 (2022. 8. 16. ~ 8. 31.)

□ 주요활동: 결산, 법률안 등 안건심의

※ 2021회계연도 결산: 정기회 개회 전까지 심의·의결 완료(「국회법」 제128조의2)

□ 회기 전체 의사일정

일 자	부 의 안 건	비 고
8. 16.(화) 14:00	1. 회기결정의 건 2. 안건심의	○ 8. 16. ~ 8. 31.(16일간) ○ 휴회결의: 8. 17. (1일간)
8. 17.(수)	휴 회 (1일간)	○ 위원회 활동 - 결산 및 법률안 등 안건심사
8. 18.(목) 14:00	1. 안건심의	○ 휴회결의: 8. 19. ~ 8. 24. (6일간)
8. 19.(금)~8. 24.(수)	휴 회 (6일간)	○ 위원회 활동 - 결산 및 법률안 등 안건심사
8. 25.(목) 14:00	1. 결산 등 안건심의	○ 휴회결의: 8. 26. ~ 8. 31. (6일간)
8. 26.(금)~8. 31.(수)	휴 회 (6일간)	○ 위원회 활동 - 법률안 등 안건심사

